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3 선고 2024가단525987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

담당변호사 이준석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변론 종결2024. 11. 19.

판결 선고2024. 12. 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A는 80,737,478원 및 이 중 80,272,978원에 대하여,

나.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금원 중 71,318,875원 및 이 중

70,854,375원에 대하여,

각 2024. 5. 22.부터 2024. 8. 1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전연숙

별지